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434호 2019. 4. 29(월)

## 차 례

###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75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7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 및 도로구간 고시 ----- 3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7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5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78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8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79호 하천 점용허가 고시 ----- 10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728호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730호 인천광역시 서구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1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738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 낳고 싶고 양육하기 좋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3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739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5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75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주상1,2블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4.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인천 서구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주상1,2블록 주상복합 신축
2. 사업주체 : 아시아신탁(주) (대표 배일규)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주상1,2블록
  - 나. 대지면적 : 70,422㎡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466,221,1759㎡ (지하4층, 지상37~45층)
  -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11개동 2,378세대, 업무시설(오피스텔) 1개동 726호 및 근린생활시설과 이에 따르는 부대·복리시설
  - 마. 사 업 비 : 1,231,323,934천원
  - 바. 변경내용
    - 1) 구조 일반사항 변경
    - 2) 지하주차장 인접 기초 통합 및 크기 변경

- 3) 지하주차장 기둥 위치 이동
- 4) 배근 변경(지하주차장 기둥·보·외벽)
- 5) 벽체 일람 오기 정정 등

4. 사업기간 : 2018. 09. 28. ~ 2022. 01. 15.

5.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가.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9- 7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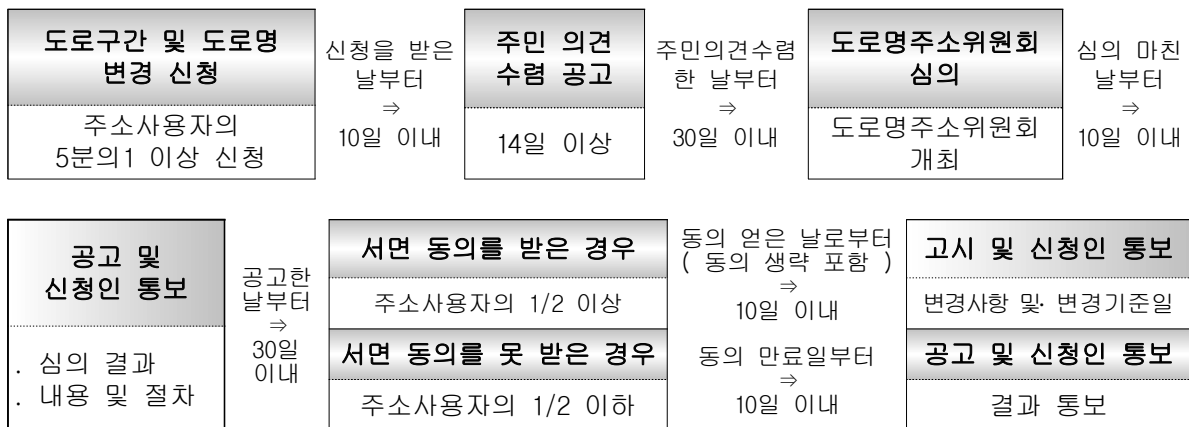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 및 도로구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4. 29.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고 시 일 : 2019. 4. 29.
2. 고시방법 : 구보,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붙임 조서와 같음)
4.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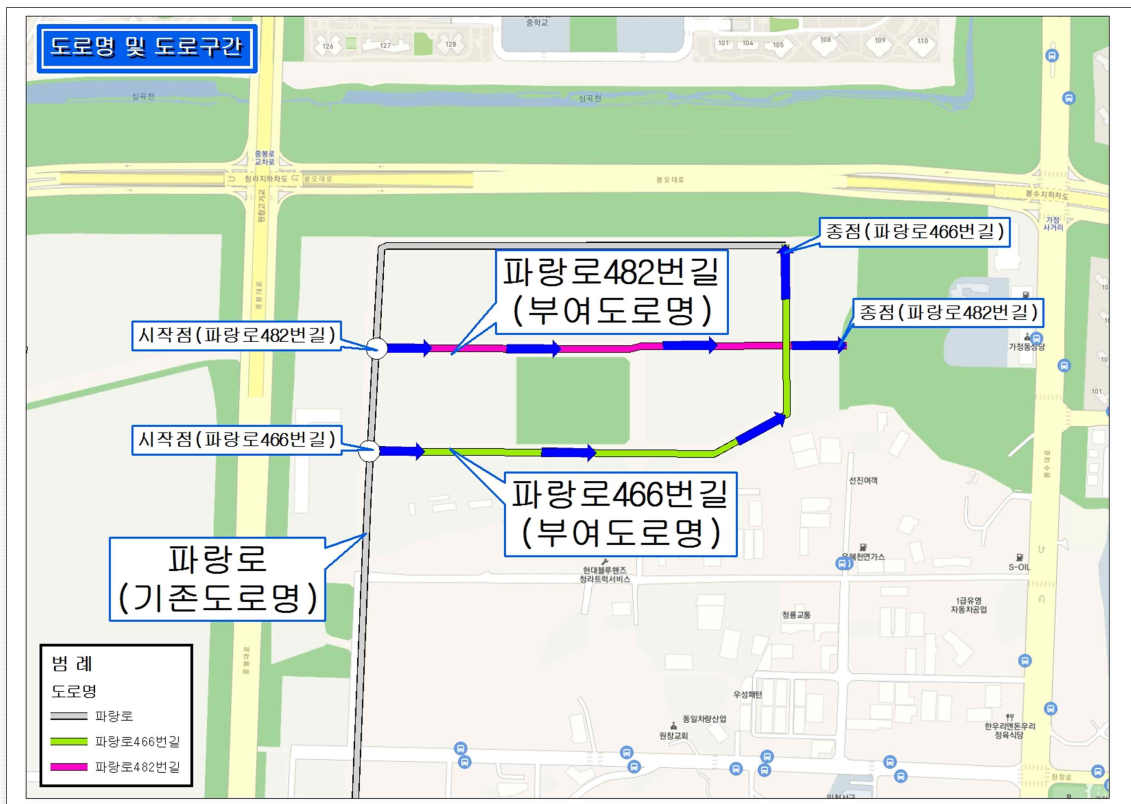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새주소팀 (☎032-560-48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명부여 조서 및 도로구간 1부. 끝.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부여 조서 및 도로구간

연번	도로구분	예비도로명	기점		종점		제원		기초간격(m)	관할행정구역	도로명 부여사유
			읍면동	지번	읍면동	지번	길이(m)	폭(m)			
1	로	파랑로 466번길	청라동	1-1189	청라동	1-1148	885	20	20	청라1동	파랑로 시작지점에서 4,660m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로	파랑로 482번길	청라동	1-1167	청라동	1-1161	697	20	20	청라1동	파랑로 시작지점에서 4,820m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도로명 및 도로구간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9-77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4. 29.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원당대로 976-86 외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04.29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9-04-29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448-6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976-86 (원당동)	20081231	으뜸이 되는 당이라는 뜻의 옛 지명에서 유래	
2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36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140 (가좌동)	20090922	천일염을 생산하던 마을이 있던 곳을 통과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7-7	인천광역시 서구 도곡로 224 (대곡동)	20130730	도치울이라고 불리던 옛지명 활용	
4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771-12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755번길 10-1 (불로동)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5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15-2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128번길 25-5 (오류동)	20090922	단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05-77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로13번길 4 (청라동)	20130730	푸른로 시작지점부터 약 1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78호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B15-1블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4.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명 : 인천 검단신도시 AB15-1블록 우미린 공동주택 신축
2. 사업주체 : 우미건설(주) (대표 이석준)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B15-1블록
  - 나. 대지면적 : 65,087㎡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199,117.0466㎡ (지하2층, 지상23~29층)
  - 라.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13개동 1,268세대 및 이에 따르는 부대·복리시설
  - 마. 사업비 : 512,342,530천원
4. 사업기간 : 2018. 12. 24. ~ 2022. 01. 17.

## 5. 변경사항

## 가. 사업기간변경

- 기존 : 2018.12.01.~2021.12.31.
- 변경 : 2018.12.24.~2022.01.17.

## 나. 바닥높이 변경(주출입구, 주차장 등)

## 다. EV기계실 높이 변경 및 치수오기 정정

## 라. 근린생활시설 바닥높이, 출입구, 칸막이 등 변경

## 마. 1513동 출입구 변경

## 바. 기초변경(지내력기초 전단보강, 파일기초 추가 적용 등)

## 사. 지하수위 및 굴착 깊이 변경

## 아. 설계자 대표 변경 등

## 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9 - 79 호

## 하천 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4.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가. 하천의 명칭 : 아라천(국가하천)

- 1) 허가 번호: 제2019 - 04호
- 2) 허가년월일: 2019. 04. 26.

나.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동광지엔티
- 2) 주 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2길 3, 202호

다.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선박 운항(탐사측량 및 정보화 기술 용역)

라. 점용지역의 위치 및 목적

- 1) 위 치: 인천 서구 시천동 162-12번지 일원
- 2) 목 적: 탐사측량(고무보트 이용)

마.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04. 26. ~ 2019. 05. 05.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728호

##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4.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제정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정책의 공공적 가치구현을 위해 「건축기본법」에서 정한 민간전문가의 참여와 효율적인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건축기본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목적을 명시(안 제1조)
- 서구 총괄건축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서구 공공건축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서구 총괄건축가 및 서구 공공건축가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민간전문가의 업무 원칙과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3. 의견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건축과장)에게 2019. 5. 2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032-560-4747, FAX 032-560-2769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사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의 건축정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구 총괄건축가 운영 등)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주요 공공사업의 총괄조정 등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역 현황에 부합한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서구 총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서구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서구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검토 및 자문

2. 구청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간 환경사업의 기획·발주·기본설계에 대한 총괄조정 및 자문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관한 기획 및 자문
4.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자문

- ④ 구청장은 서구 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 ⑤ 서구 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서구의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⑥ 구청장은 서구 총괄건축가의 업무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⑦ 서구 총괄건축가는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문의 기본방향 등 업무처리기준을 서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3조(서구 공공건축가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지역에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 설계 또는 총괄조정 및 관리하는 전문가(이하 ‘서구 공공건축가’라 한다)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서구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서구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또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자문
2.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의 기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사업의 기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④ 구청장은 서구 공공건축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인천광역시장의 협조를 받아 인천광역시 공공건축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제4조(서구 총괄건축가 및 서구 공공건축가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서구 총괄건축가 및 서구 공공건축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가를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민간전문가로 적합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민간전문가의 업무 원칙) ① 민간전문가는 관련 부서장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강압적 태도와 지시를 지양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전문가와 인천광역시 공공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실·과별 협의 및 의견수렴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과별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2019.4.29. ~ 2019.5.20. ○ 내 용 - 의견수렴	-	-	-
입 법 예 고			
협의개요	제 출 자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2019.4.29. ~ 2019.5.20. ○ 내 용 - 구보게재 - 인터넷	-	-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730호

## 인천광역시 서구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4.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제정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를 쾌적한 환경의 살기 좋은 도시인 스마트에코시티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3조)
- 주민 참여와 협력,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제5조)
- 스마트에코시티 종합계획 수립(안 제6조)
- 교육 · 홍보(안 제7조)
- 스마트에코시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8조 ~ 제13조)
- 주민협의체의 설립(안 제14조)

### 3. 의견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건축과장)에게 2019. 5. 2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4747, FAX 032-560-2769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쾌적한 환경의 살기 좋은 도시를 첨단기술로 주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 도시의 비전인 스마트에코시티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스마트에코시티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생태계 보전과 도시의 공간환경에 활용하며 주민이 도시정책 의사 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2. 도시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마을과 도시의 공간환경으로 통합되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에코도시
3. 첨단기술과 생태가 도시의 공간환경에 융합하여 품격 있는 건축과 도시 공간을 만들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융합도시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에코시티”는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축·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과 사회, 지역경제가 균형발전하며 현세대와 차세대 주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말한다.
2.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기술,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① 주민은 누구나 스마트에코시티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협력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스마트에코시티 정책 결정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및 인천광역시의 관련 정책과 연계하여 스마트에코시티 비전을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스마트에코시티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에코시티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스마트에코시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에코시티의 핵심가치
2. 스마트에코시티의 정책수행의 기본원칙
3. 단계별 정책목표와 추진방안
4. 스마트에코시티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교육·홍보 등)** ① 구청장은 공무원과 주민의 스마트에코시티 정책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에코시티 비전 확산을 위해 홍보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스마트에코시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스마트에코시티 정책 구현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스마트에코시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보건소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2명의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총괄건축가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구의원
2. 학계, 시민단체, 건축, 도시계획, 경제, 조경, 환경, 문화, 정보통신 분야 등에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또는 주민 등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에코시티 정책에 관한 사항
2. 스마트에코시티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스마트에코시티 정책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구청장이 소집된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스마트에코시티 소관 업무 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주민협의체의 설립)** ① 주민은 스마트에코시티 구현과 도시문제 해결에 참여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도시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 3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인천광역시 서구 스마트에코시티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 대표는 주민협의체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 ③ 제2항에 따라 선출된 주민협의체의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 설립 사실의 신고
  2. 제5항에 따른 예산 집행 내역 및 사업계획의 보고(제5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주민협의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주민협의체를 대표하거나 총괄하여 수행하여야 할 업무
- ④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활동한다.
1. 일상생활에서의 도시문제 의제화
  2. 의제화된 도시문제 해결방안 모색
  3. 기타 스마트에코시티 활성화를 위한 활동
- ⑤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⑥ 주민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야별, 의제별 분과를 둘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실·과별 협의 및 의견수렴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과별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2019.4.29. ~ 2019.5.20. ○ 내 용 - 의견수렴	-	-	-
입 법 예 고			
협의개요	제 출 자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2019.4.29. ~ 2019.5.20. ○ 내 용 - 구보게재 - 인터넷	-	-	-

##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쾌적한 환경의 살기 좋은 도시를 첨단기술로 주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 도시의 비전인 스마트에코시티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스마트에코시티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생태계 보전과 도시의 공간환경에 활용하며 주민이 도시정책 의사 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2. 도시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마을과 도시의 공간환경으로 통합되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에코도시
3. 첨단기술과 생태가 도시의 공간환경에 융합하여 품격 있는 건축과 도시공간을 만들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융합도시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에코시티”는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축·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과 사회, 지역경제가 균형발전하며 현세대와 차세대 주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말한다.

2.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기술,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① 주민은 누구나 스마트에코시티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협력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스마트에코시티 정책 결정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및 인천광역시의 관련 정책과 연계하여 스마트에코시티 비전을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스마트에코시티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에코시티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스마트에코시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에코시티의 핵심가치
2. 스마트에코시티의 정책수행의 기본원칙

3. 단계별 정책목표와 추진방안

4. 스마트에코시티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교육·홍보 등)** ① 구청장은 공무원과 주민의 스마트에코시티 정책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에코시티 비전 확산을 위해 홍보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스마트에코시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스마트에코시티 정책 구현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스마트에코시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보건소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2명의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총괄건축가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구의원
2. 학계, 시민단체, 건축, 도시계획, 경제, 조경, 환경, 문화, 정보통신 분야 등에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또는 주민 등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에코시티 정책에 관한 사항
2. 스마트에코시티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스마트에코시티 정책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구청장이 소집된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스마트에코시티 소관 업무 담당이 된다.
-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주민협의체의 설립)** ① 주민은 스마트에코시티 구현과 도시문제 해결에 참여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도시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 3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인천광역시 서구 스마트에코시티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 대표는 주민협의체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출된 주민협의체의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 설립 사실의 신고
2. 제5항에 따른 예산 집행 내역 및 사업계획의 보고(제5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주민협의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주민협의체를 대표하거나 총괄하여 수행하여야 할 업무

④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활동한다.

1. 일상생활에서의 도시문제 의제화
2. 의제화된 도시문제 해결방안 모색
3. 기타 스마트에코시티 활성화를 위한 활동

⑤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주민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야별, 의제별 분과를 둘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738호

##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 낳고 싶고 양육하기 좋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 낳고 싶고 양육하기 좋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4. 29.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제정이유

-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임신과 출산, 육아와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인천광역시 서구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이 낳고 싶고 양육하기 좋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내용(안 제3조)
- 차상위계층 지원내용(안 제4조)
- 산후조리비 지원내용(안 제5조)
- 출산·입양 축하금, 차상위계층,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안 제6조)

- 차상위계층, 산후조리비 지원방법(안 제7조)
- 지원신청 및 절차(안 제8조 ~ 제9조)
- 지급의 중단등, 대장비치, 환수조치(안 제10 ~ 12조)
- 저출산 대책지원(안 제13조)

### 3. 의견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기획예산실장)에게 2019. 5.2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5905, FAX 032-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 낳고 싶고 양육하기 좋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임신과 출산, 육아와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이 낳고 싶고 양육하기 좋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양아”란 「입양특례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 중 「영유아 보육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영유아를 말한다.
2. “출산·입양 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녀를 출산하였거나, 영유아를 입양하였을 경우 이를 축하하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차상위 계층 지원”이란 각 개별법상 차상위 복지대상자인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자활”에게 출산축하용품비를 지급하는 사항을 말한다.
4. “산후조리비”란 서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보호와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급하는 지원을 말한다.

5. “아이돌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6. “보호자”란 부모를 포함한 친권자·후견인 등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한 자를 말한다.
7. “거주지”란 주민등록지를 말한다
8. “지원대상자”란 지원 대상 아이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축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9. “서구 지역화폐”란 그 명칭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발행한 지역화폐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종이화폐와 전자화폐를 말한다

제3조(축하금) ① 구청장은 보호자가 자녀를 출산·입양하여 계속 양육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한도로 구청장이 결정하여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첫째아 축하금 50만원 이내
2. 둘째아 축하금 100만원 이내
3. 셋째아 축하금 300만원 이내
4. 넷째아 이상 축하금 500만원 이내

② 입양아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의 순위를 정한다.

- ③ 다태아는 출생순서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출생의 순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일자에 따른다.
- ④ 지원대상자가 재혼한 경우, 전혼(前婚)중의 자녀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올라 있는 경우에만 그 순서에 포함한다.
- ⑤ 구는 축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차상위계층지원) 구청장은 보호자가 자녀를 출산하여 계속 양육하는 차상위계층에게 출생아 1인당 30만원을 출산축하용품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산후조리비지원) 구청장은 보호자가 자녀를 출산하여 계속 양육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산후조리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① 제3조 내지 제5조의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서구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양육하거나, 입양·양육하는 다음 각 호의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출산 또는 입양을 하였으나 보호자가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1. 부 또는 모

2. 부모의 사망·이혼 등으로 인하여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② 제3조 내지 제5조에 따른 지원은 아이 1명당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7조(지원방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8조(지원신청) ① 제3조 내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신청인 예금통장사본 1부를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3조 내지 제5조에 따라 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신청인 예금통장사본 1부를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아의 출생 및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3조 내지 5조에 의한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의 확인 결과 제3조 내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축하금을 지급한다.

1. 출산·입양 축하금 등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축하금 지원대상자 예금통장 사본 등

제10조(지원의 중단등) 구청장은 지원기간 동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출생아의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축하금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등 지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제11조(대장 등 비치) 동장과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축하금 지원 신청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사실 신고 등으로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② 축하금을 환수한 때에는 축하금 지원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13조(저출산 대책 지원) 구청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의 지원
2. 출산장려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행사·홍보사업등 지원
3.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친화사업 지원

4. 그 밖에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하금 지급 적용례) 조례 제3조 내지 제5조는 2019년 7월 1일 출생  
(입양)아부터 소급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출산·입양축하금 등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 )

지원내용	출산·입양 축하금 <input type="checkbox"/>			산후조리비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지원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부		생년월일				
	모		생년월일				
출산아 (입양아)	성명		생년월일				
	자녀순위	자녀 중 제					
	출생장소		출생일	년	월	일	
	입양기관		입양일	년	월	일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전화번호	주택		휴대폰				
입금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p>「인천광역시 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입양 축하금등을 신청합니다.</p> <p>신청인 주소 :</p> <p>출산(입양)아와의 관계 :</p> <p>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p> <p style="text-align: right;">20 . . .</p> <p style="text-align: right;">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p>							
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 출산·입양축하금 등 지원대상 확인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확인 사항	- 출산(입양)아 성명 : - 출산(입양)아 생년월일 :   년   월   일		
	- 자녀순위 :   자녀 중   제   - 입   양   일 :   년   월   일		
	- 신청인 서구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확인자 의견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실·과별 협의 및 의견수렴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과별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2019.4.29.~2018.5.20. ○ 내 용 - 의견수렴	-	-	-
입 법 예 고			
협의개요	제 출 자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2019.4.29.~2018.5.20. ○ 내 용 - 구보게재 - 인터넷(홈페이지)	-	-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 - 739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4.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공유재산심의회의 서면심의에 대한 규정 마련
- 사회적 가치 실현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 지원의 요구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기업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요율을 정하여 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활성화에 기여

#### 2.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의 서면심의를 규정 신설
- 공유재산대장의 전산화로 인한 전산자료 대체화
- 구청장이 수립하는 일자리 정책에 따라 창업을 위한 미취업자 (미취업 청년 등) 및 자활기업가가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10이상 항목에 대부료의 요율 추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청 재무과
- 전화번호 : 032-560-4163 (FAX 560-2720)

###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개정이유

- 공유재산심의회의 서면심의에 대한 규정 마련
- 사회적 가치 실현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 지원의 요구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기업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요율을 정하여 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활성화에 기여

## 2.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의 서면심의를 규정 신설
- 공유재산대장의 전산화로 인한 전산자료 대체화
- 구청장이 수립하는 일자리 정책에 따라 창업을 위한 미취업자(미취업 청년 등) 및 자활기업가가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10이상 항목에 대부료의 요율 추가

##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할 수 있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중 “서식에 따라” 를 “서식과 같이” 로, “한다” 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로 한다.

제21조의2 중 “영 제13조제3항제20호” 를 “영 제13조제3항제23호” 로 한다.

제29조제4항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창업가가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7.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8.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각” 을 “다음 각” 으로 한다.

제35조 중 “대부료가” 를 “대부료보다” 로,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을 “증가한 경우” 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

## 1. 본청

##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단위 : m<sup>2</sup>)

구분 기관별	기관장실	부기관장실	실.국장실	실.과장실	담당 또는 계장	직 원
구분청	99	38.88	38.88	17.92	7.65	7.2
동청사	23	14.80	-	-	7.65	7.2

## 나. 부속공간 면적

(단위 : m<sup>2</sup>)

실명		설계기준					비고
회의실 (사용인원)		24명 미만	25~49명	50~99명	100~149명	150~199명	200명이상시 면적 = 0.8m <sup>2</sup> ×사용인원
		4~2.4m <sup>2</sup> /인	2.6~1.5m <sup>2</sup> /인	2~1.2m <sup>2</sup> /인	1.6~1m <sup>2</sup> /인	1.2~0.9m <sup>2</sup> /인	
상황실	구	2.64 × (과장급 이상 수 + 동장 수)					
서비스 및 동선 부분	화장실	100명 미만	100명~200명	200명 이상			
		0.43m <sup>2</sup> / 인	0.40m <sup>2</sup> / 인	0.33m <sup>2</sup> / 인			
	엘리베이터	(12.87~19.6m <sup>2</sup> ) × 대수					
식당		1.63m <sup>2</sup> × 공무원 수 × 0.3					
휴게실		2.0m <sup>2</sup> × 공무원 수 × 0.15					
민원실		{(6.55m <sup>2</sup> ×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m <sup>2</sup> ~0.2m <sup>2</sup> ×민원인 수×0.5)}					민원인 공간확장 가능
숙직실	1인	2~3인	4인 이상				
	15.12m <sup>2</sup> / 인	11.52m <sup>2</sup> / 인	8.64m <sup>2</sup> / 인				
자료실		(0.3~0.4m <sup>2</sup> ) × 공무원수					
창고		0.72m <sup>2</sup> /인 ~ 0.85m <sup>2</sup> /인					
전산실		9.79m <sup>2</sup> × 담당직원 수 × 1.2					
민방위대피시설		개소당 660m <sup>2</sup> 이상					평시 충무시설로 이용

## 다. 설비관계 면적

(단위 : m<sup>2</sup>)

실 명		설 계 기 준					
공조 기계실	연 면 적	~3,000	3,000~7,500	7,500~13,000	13,000~18,000	18,000~23,000	23,000~
	연면적대(%)	4.5~7.0	4.0~6.0	3.5~4.5	3.0~4.0	2.5~3.5	2.3~2.8
층장비실	사무공간	500m <sup>2</sup>		800m <sup>2</sup>		1,000m <sup>2</sup>	
	층장비실	6.6m <sup>2</sup>		8.4m <sup>2</sup>		10.2m <sup>2</sup>	
주장비실	사무공간	~1,000	1,000~4,000	4,000~8,000	8,000~12,000	12,000~16,000	
	주장비실	14	37	74	111	149	
	사무공간	16,000~20,000	20,000~24,000	24,000~28,000	28,000~32,000		
	주장비실	186	223	260	297		

라. 공용면적 : [(직무면적+부속공간면적+설비관계면적) x 30 ~ 40%]

## 2. 의회 청사

(단위 : m<sup>2</sup>)

구 분		실 명	면 적 기 준	비 고	
의 원 실	a	의 장 실	집행기관장실 면적 준용		
		부의장실	집행기관 부기관장실 면적 준용		
		위원장실	집행기관 실국장실, 실과장실 면적 준용	구 위원회 수 : 3개	
회 의 실	b	본회의장	의원 수 × 5 + 방청객 수* × 1.5m <sup>2</sup> 이상		
		회 의 실	의원 수 × 3.3m <sup>2</sup>	면적범위내에서 적정한 규모로 분할	
		위원회실	의원 수 × 8.2m <sup>2</sup>	위원회 수 : 3개	
부 속 공 간	c	사무국장실	38.88 ~ 64.0m <sup>2</sup>		
		사 무 실	직원 수 × 7.2m <sup>2</sup>		
		자료실 및 도서실	198 ~ 297m <sup>2</sup>		
		대기실	의 원	의원 수 × 2.5m <sup>2</sup>	
	기 자		50m <sup>2</sup>		
	운전기사		운전기사 수 × 1.8m <sup>2</sup>		
	d	휴게실	의 원	의원 수 × 2m <sup>2</sup>	
			직 원	직원 수 × 2m <sup>2</sup>	
			방청객	방청객 수* × 2m <sup>2</sup>	
	당 직 실	2인실 기준 15m <sup>2</sup>			
	화 장 실	시 : 45~47m <sup>2</sup> 군 : 36~77m <sup>2</sup> 구 : 44~46m <sup>2</sup>			
	기 타	예비실(50m <sup>2</sup> )을 1개소이상 확보	창고 / 예비실 등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 + b + c) × 3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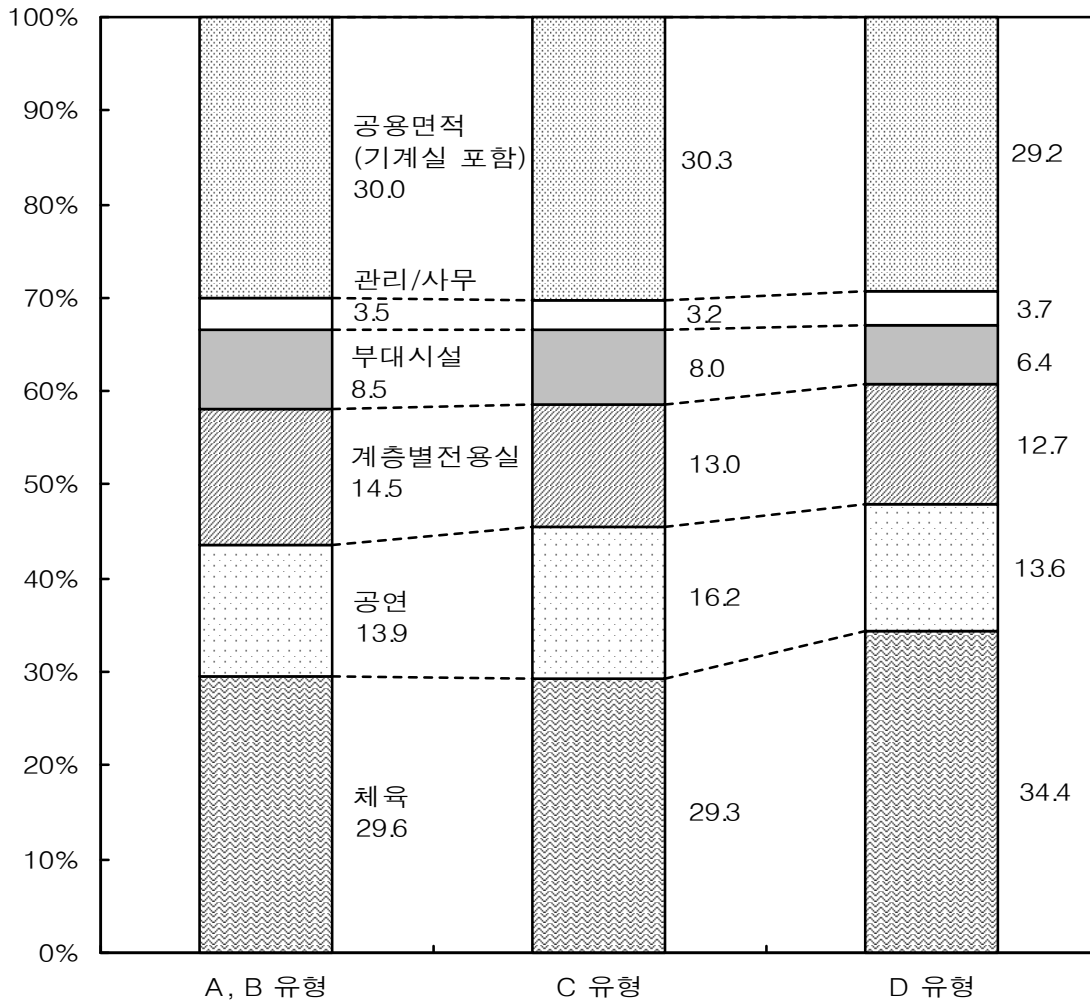
\* 방청객 수 = 인구 수 × 0.000015 + 50

### 3. 종합회관

#### 가. 인구규모별 설계유형

유형	인구	수용시설설정
A	30-50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 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기능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6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한다.</li> <li>- 체육시설은 고정석 1,2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시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8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내에 무대장치를 마련한다.</li> <li>- 6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li> <li>-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li> </ul>
B	15-30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유형과 대등한 시설을 구비하되 각 공간의 규모면에서 A유형의 약 83% 정도가 되도록 각 실을 계획한다.</li> <li>-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 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기능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한다.</li> <li>- 체육시설은 고정석 1,0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시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0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내에 무대장치를 마련한다.</li> <li>- 5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li> <li>-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li> </ul>
C	10-15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하는 체육성격은 농구 및 배구경기이며 고정식 스탠드의 규모를 다소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i> <li>- 공연장 규모는 400석이나 A유형보다 각종 부대시설의 면적이 축소, 조정될 수 있다.</li> <li>- 전체적으로 규모에 따라 각 시설별로 수용개설을 줄이거나, 규모의 축소가 가능하나 규모 축소에 따른 각종 활동의 위축 등은 될 수 있으면 배제될 수 있도록 시설계획을 조정함이 바람직하다.</li> </ul>
D	10만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구경기 위주로 체육경기장 규모를 축소할 수 있으며, 공연장의 경우 200석 규모 정도의 소공연 전문 성격으로 마련하여 공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한다.</li> <li>- 공연 및 체육시설의 면적을 상당부분 감소시키고, 계층별 전용실 및 관리, 사무시설을 수용인원에 따라 부분적으로 면적이 조정 가능하나, 대부분의 시설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체규모가 소규모이나 시민체육이나 전문적인 공연 등으로 이용빈도의 증대와 활발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li> </ul>

나. 각 유형별 면적 배분비



## 다. 유형별 면적기준

(단위 : m<sup>2</sup>)

구 분	A유형 (인구30-50만)	B유형 (인구15-30만)	C유형 (인구10-15만)	D유형 (인구10만미만)	비 고
순 면 적 (Net Area)	6,600	5,494	3,955	2,313	
공용면적(기계실포함)	2,827	2,365	1,724	958	
연면적 (Gross Area)	9,427	7,851	5,679	3,341	·기능별 공간 연결시 ·발생되는 공용면적은 ±5~10%를 별도로 고려한다. ·주차공간은 제외된 면적임
N / G 비	70.0%	70.0%	69.6%	69.2%	

## 1) 공연시설

(단위 : m<sup>2</sup>)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극장	객 석	480	400	320	160
	무 대	290	240	240	120
	연습실	55	55	50	30
	분장실(남,여)	41	35	24	10
	분장실전용화장실	11	9	7	3
	악실 (1)	14	12	10	15
	악실 (2)	14	12	10	-
	소계 ①	905	763	661	338
부속 시설	도구비치창고	216	180	120	40
	도구반입실	33	-	-	-
	영사실	48	40	30	20
	음향실	36	30	30	20
	기기실(무대)	36	30	25	-
	조명실	24	20	20	20
	측벽투광실	12	12	12	-
	방송중계실	12	10	10	-
	소계 ②	417	322	247	100
합계	계 ① +②	1,322	1,085	908	438
	공용부분	881	723	605	292
	합 계	2,203	1,808	1,513	730

## 2) 계층별 전용시설

(단위 : m<sup>2</sup>)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아동실	아동실(1)	68	60	30	30
	아동실(2)	68	60	30	-
	부속창고	6	4	4	4
	소계 ⑤	142	124	64	34
청소년실	청소년실(1)	60	50	50	50
	청소년실(2)	40	35	-	-
	소계 ⑥	100	85	50	50
노인실	노인실(남)	60	50	50	30
	노인실(여)	60	50	50	30
	휴게실	36	30	30	-
	주 방	8	6	-	-
	건강상담실	30	24	10	-
	소계 ⑦	194	160	140	60
부녀실	부녀실(1)	120	108	50	50
	부녀실(2)	120	108	50	50
	부녀실(3)	35	35	35	-
	소계 ⑧	275	251	135	100
공용 시설	강의실	75	60	60	60
	회의실(1)	90	70	70	70
	회의실(2)	90	70	70	35
	회의실(3)	70	70	-	-
	회의실(4)	40	35	-	-
	다목적실	174	144	120	-
	주 방	18	14	8	-
	기자재창고	18	14	12	-
	전시코너	36	30	-	-
	소계 ⑨	611	507	340	165
합계	계 ⑤~⑨	1,322	1,127	729	409
	공용부분	712	607	373	220
	합 계	2,034	1,734	1,122	629

## 3) 부대시설

(단위 : m<sup>2</sup>)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전시 시설	전시실	216	162	108	54
	작업실	43	35	23	12
	창 고	43	35	23	12
	소계 ⑩	302	232	154	78
도서 시설	도서실	308	257	147	100
	소계 ⑪	308	257	147	100
식당 휴게 시설	식 당	85	70	70	-
	주방 및 창고	38	32	32	-
	휴게실	82	70	46	28
	소계 ⑫	205	172	148	28
합계	계 ⑩~⑫	815	661	449	206
	공용부분	349	283	192	88
	합 계	1,164	944	641	294

## 4) 체육시설

(단위 : m<sup>2</sup>)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경기장	경기장	1,344	1,104	714	646
	갱의실(남)	27	21	21	12
	샤워실(남)	27	21	21	12
	갱의실(여)	15	12	12	6
	샤워실(여)	14	12	12	6
	부속실(1)	72	60	40	20
	부속실(2)	48	40	40	30
	대기실	26	22	22	15
	장비실	145	120	75	60
	무대(집회용)	240	200	151	95
	트레이닝실 (소체육실)	120	100	50	-
	소계 ③	2,078	1,712	1,158	902
관람석	관람석	720	600	480	210
	상부발코니	-	-	-	-
	소계 ④	720	600	480	210
합계	계 ③+④	2,798	2,312	1,638	1,112
	공용부분	700	578	410	278
	합 계	3,498	2,890	2,048	1,390

## 5) 기타시설

(단위 : m<sup>2</sup>)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사무실	관리사무실	87	72	51	22
	관장실	64	64	64	30
	응접 및 탕비실	26	26	26	26
	소회의실	32	27	20	10
	숙직실	12	10	10	10
	안내인방송코너	12	10	10	-
	직능단체사무실(1)	55	50	50	50
	직능단체사무실(2)	55	50	-	-
	소계 ㉓	343	309	231	148
합 계	계 ㉓	343	309	231	148
	공용부분	185	166	124	80
	합 계	528	475	355	228

## 4. 보건소

(단위 : m<sup>2</sup>)

구분		실 명	면 적 기 준
			시 보건소
진료 활동	a	접수 / 수납	13.86
		의무기록창고	10.89
		대기공간	48.00
		약국조제실	13.86
		약국창고	13.86
		일반진찰실	53.46
		처치실	17.80
		치과진찰실	27.54
		치과장비실	2.70
		치과용 암실	2.16
		소독실	8.91
		예방접종실	17.82
		소아놀이실	9.90
		수유실	7.92
		화장실	31.68
		장애자용 화장실	4.86
보건 사업	b	결핵관리실	17.82
		상담실	35.64
		방사선실	81.66
진료 지원	c	임상검사실	65.34
사무 부 문	d	소장실	33
		전실(탕비실)	9.90
		소회의실	17.82
		사무실	직원 수 × 7.2 m <sup>2</sup>
		다목적실	144
		창고	59.4
		여자휴게실	40
		당직실	13.86
		화장실	17.82
설비	e	기계실 및 전기실	66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b+c+d+e) × 30~40%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 5.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3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각

④ -----  
-----  
-----  
--.

1. ~ 5. (현행과 같음)

6.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창업가가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7.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8.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제3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  
-----  
-----  
-----  
-----  
-----  
-----  
-----  
----- 다음 각

<p>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제35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에 따라 그 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 또는 <u>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u></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35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 ----- ----- ----- <u>대부료보다</u> - ----- <u>증가한 경우</u> ----- ----- -----.</p>
--	---